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 기준과 판단 보조자료로서의 제도적 필요성에 관한 연구

초록

특허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과 출원발명 사이에 일부 유사한 용어, 기능 또는 기술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진보성 판단은 먼저 청구항 발명을 정확히 확정하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 후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는지,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차이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출원 당시 쉽게 예측 가능한지, 판단 과정이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의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특허 진보성을 구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 V1.0을 제시한다.

본 기준서는 청구항 발명의 확정, 선행기술의 확정, 공통점과 차이점의 특정,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표준 평가절차로 삼는다.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구조평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법률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은 최종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항 분석,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특정, 결합동기 검토, 작용효과 분석 및 판단 오류 점검을 구조화하여, 판단기관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평가방식이다.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가 마련되는 경우, 인공지능 평가가 단순한 검색도구나 참고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화된 판단 보조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청구항의 상위개념화, 선행기술 끼워 맞추기, 효과의 사후적 경시 및 청구항 구성 누락과 같은 판단 오류를 통제하기 위하여 검

증 로그와 오류통제 절차가 필요함을 밝힌다.

주제어: 인공지능 평가, 특허 진보성, 구조평가기준서,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비, 결합동기, 작용효과, 사후적 고찰, 검증 로그, 오류통제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기술적 창작이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중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서, 특허 허부를 좌우하는 핵심 판단영역이다.

진보성 판단은 단순한 유사성 판단이 아니다. 선행기술과 출원발명 사이에 일부 유사한 용어, 기능 또는 기술분야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진보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청구항 발명을 정확히 확정하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는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거나, 선행문헌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복수의 선행기술을 출원발명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결합하거나, 출원발명의 효과를 발명을 알고 난 뒤 당연한 것으로 경시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판단을 항목별로 구조화하고, 입력자료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며, 판단 경로와 오류통제 결과를 검증 로그로 남기는 체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 진보성 판단이 본질적으로 구조적 판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인공지능이 특허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 V1.0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법률판단을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평가의 역할을 최종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항 분석, 선행기술 분석, 공통점과 차이점 특정, 결합동기 검토, 작용효과 분석, 사후적 고찰 점검 및 오류통제의 구조화로 한정한다.

기준 없는 인공지능 평가는 임의적 판단 또는 단순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가대상, 입력자료, 평가절차, 판단기준, 오류통제 기준 및 검증 로그가 사전에 정의되는 경우, 인공지능 평가는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구조평가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를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진보성 평가가 특허심사,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 판단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판단 중 특히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특정,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및 사후적 고찰 통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진보성 판단의 법적 구조를 검토한다.

둘째, 청구항 해석과 선행기술 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분석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의 개념과 한계를 정리한다.

넷째,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 V1.0을 제시한다.

다섯째, 이 기준서가 특허심사, 심판 및 소송에서 판단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제2장 특허 진보성 판단의 법적 구조

### 제1절 특허법 제29조 제1항과 선행기술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위 규정은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 확정의 출발점이 된다. 진보성 판단에 앞서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그 선행기술이 어느 범위까지 기술내용을 개시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유용하다. 인공지능은 다수의 선행문헌을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기술적 과제, 구성, 작용효과 및 기술적 맥락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선행문헌의 일부 문구만을 분리하여 과도하게 확장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헌 전체 기준의 요약과 구성요소별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절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진보성의 법률상 기준은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을 기초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가”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라는 단순 비교가 아니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의 구체적 차이점을 먼저 특정한 뒤, 그 차이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이 법률상 기준을 실제 판단 절차로 전환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인공지능은 청구항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확정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추출하며, 그 차이 구성에 대한 개시 또는 시사 여부,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단계별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절 통상의 기술자와 출원 당시 기준

진보성 판단은 출원 당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판단자는 사후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알게 된 현재의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조합하여서는 안 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선행기술과 기술상식만을 가지고 차이 구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이 기준을 검증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즉, 평가서에는 선행기술 선택 이유가 출원발명 인식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차이 구성의 도출 근거가 선행기술 자체에 있었는지, 결합 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공 기대가 있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청구항 해석과 선행기술 확정의 기준

### 제1절 청구항 기준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 역시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청구항 문언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가 가지는 기능, 배치, 연결관계, 작용순서 및 기술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청구항 발명의 확정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제2절 객관적·합리적 해석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

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청구항 문언, 명세서 및 도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동시에 명세서나 도면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위험을 표시할 수 있다.

### 제3절 청구항 상위개념화 금지

청구항에 특정 구조, 특정 배치, 특정 처리단계, 특정 작용관계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선행기술에 맞추기 위하여 더 넓은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특정 광학 경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광학 수단”으로 일반화하거나, 특정 센서 배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센서 구조”로 일반화하거나, 특정 데이터 처리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영상 처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청구항의 구체적 차이 구성을 지워버릴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이러한 상위개념화 오류를 점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청구항의 구체적 문언과 선행기술의 대응 구성을 나란히 대비하고, 판단자가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더 넓은 개념으로 바꾸어 대비하고 있는지 표시할 수 있다.

### 제4절 선행문헌 전체 기준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문헌의 일부 표현, 요약, 초록, 도면 일부만을 분리하여 출원발명과 억지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선행기술은 문헌 전체의 기술적 과제, 구

성, 작용효과 및 기술적 맥락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선행문헌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문헌이 해결하려는 과제, 핵심 구성, 작동 방식, 효과 및 한계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선행문헌의 일부 문구를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출원발명에 맞추어 선행기술을 재구성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제4장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 V1.0

### 제1절 기준서의 목적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 V1.0은 인공지능이 특허출원 발명 또는 등록 특허의 진보성을 구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입력자료, 판단 절차, 평가항목, 오류통제 기준 및 검증 로그 작성 기준을 정의한다.

본 기준서는 인공지능이 특허성을 최종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청구항 발명,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 수준, 차이 구성,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판단기관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제2절 기본 원칙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첫째, 청구항 기준 원칙이다.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다. 청구항에 없는 구성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삭제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선행기술 전체 기준 원칙이다. 선행기술은 문헌의 일부 문구나 일부 도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문헌 전체의 기술적 과제, 구성, 작동방식, 효과 및 한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셋째, 차이점 특정 원칙이다. 진보성 판단은 먼저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이다. 출원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끼워 맞추어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검증 로그 원칙이다. 인공지능은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확정, 차이점 특정, 결합동기 판단, 작용효과 판단 및 사후적 고찰 점검 과정을 검증 로그로 남겨야 한다.

### 제3절 입력자료 기준

특허 진보성 AI 구조평가는 다음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첫째, 청구항 자료이다. 평가대상 청구항, 종속항, 청구범위 전체가 포함된다.

둘째, 명세서 자료이다.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과제, 해결수단, 효과, 실시예가 포함된다.

셋째, 도면 자료이다. 도면, 부호 설명, 구성요소의 배치 및 연결관계가 포함된다.

넷째, 선행기술 자료이다. 심사관 인용문헌, 선행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공개자료, 제품자료가 포함된다.

다섯째, 심사자료이다.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면담기록, 심사기준자료가 포함된다.

여섯째, 법령·판례 자료이다. 특허법 제29조, 제97조, 관련 판례 및 심사기준이 포함된다.

일곱째, 기술수준 자료이다. 출원 당시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 수준, 기술상식, 업계 요구 및 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된다.

### 제4절 표준 평가절차

#### PI01 평가대상 청구항의 특정

먼저 평가대상 청구항 번호와 평가범위를 특정한다. 평가서에는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평가대상 청구항, 독립항 또는 종속항 여부, 보정전후 여부, 평가대상 선행기술이 표시되어야 한다.

#### PI02 청구항 발명의 확정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확정한다. 이때 각 구성요소의 문언, 기능, 배치, 연결관계, 작용순서, 처리대상, 명세서 대응 부분, 도면 대응 부분, 필수 구성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 PI03 선행기술의 확정

선행문헌의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 이때 선행문헌의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핵심 구성, 작동방식, 효과, 한계 및 청구항 발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PI04 공통점과 차이점의 특정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특정한다. 차이점은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성요소 단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PI05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직접 개시되어 있는지, 또는 선행기술이나 기술상식에 의해 시사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단순 기능 유사성만으로 차이 구성이 개시 또는 시사되었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PI06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

둘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그 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기술분야의 밀접성, 해결과제의 공통성, 구성요소의 기능·작용의 공통성, 선행문헌 자체의 결합 암시, 출원 당시 업계 요구, 합리적 성공 기대, 기술적 장애 및 부정적 교시 여부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PI07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차이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예측 가능한지 판단한다. 선행기술과 동일한 효과인지, 차이 구성으로 인한 새로운 효과인지, 기존 문제가 해결되는지, 구성의 결합으로 새로운 작용관계가 발생하는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 PI08 사후적 고찰 여부 점검

판단 과정이 출원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끼워 맞춘 것인지 점검한다. 선행기술 선택 이유가 출원발명 인식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차이 구성의 도출 경로가 선행기술 자체에서 나오는지, 복수 문헌 결합이 사후 조합인지, 효과를 발명 이후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낮게 평가했는지, 청구항 구성을 선행기술에 맞추어 상위개념화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절 오류통제 기준

특히 진보성 AI 구조평가는 다음 오류를 별도로 점검하여야 한다.

첫째, 청구항 상위개념화 오류이다. 이는 청구항의 구체적 구조, 배치, 처리단계, 작용관계를 넓은 개념으로 바꾸어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오류를 말한다.

둘째, 선행기술 끼워 맞추기 오류이다. 이는 복수 선행기술에 각각 일부 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합동기 없이 출원발명 전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오류를 말한다.

셋째, 효과의 사후적 경시 오류이다. 이는 출원발명의 효과를 발명을 알고 난 뒤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넷째, 청구항 구성 누락 오류이다. 이는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를 대비표에서 누락하거나 판단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말한다.

다섯째, 선행문헌 일부 확장 오류이다. 이는 선행문헌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문헌 전체가 개시하지 않은 내용을 개시한 것처럼 보는 오류를 말한다.

## 제6절 평가단계와 검증 로그

각 평가항목은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점수는 최종 법률판단이 아니라 구조평가 점수이다.

평가단계는 P0 평가불가, P1 예비분석, P2 잠정평가, P3 구조평가, P4 판단보조자료로 구분한다.

인공지능 진보성 평가서는 평가대상 청구항, 입력자료 목록, 청구항 구성요

소 분석표, 선행기술 분석표, 청구항·선행기술 대비표, 차이점 목록,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근거, 복수 선행기술 결합동기 검토, 작용효과 검토, 사후적 고찰 점검, 오류통제 결과, 평가 한계 및 추가 필요자료를 검증 로그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장 판단 보조자료로서의 제도적 필요성

### 제1절 최종 법률판단과 구조평가의 구별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구조평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법률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최종 법률판단은 여전히 인간 판단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최종 법률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구항 확정, 선행기술 확정, 차이점 특정, 결합동기 검토, 작용효과 분석 및 사후적 고찰 점검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바로 이 판단 전단계를 정리하고 오류 가능성을 표시하는 보조 평가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 제2절 특허청 심사에서의 활용 가능성

특허청 심사에서는 다수의 선행문헌이 인용되고,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대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청구항 구성요소 분석표, 선행기술 분석표, 청구항·선행기술 대비표를 작성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심사관이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고 있는지, 선행문헌의 일부 문구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는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3절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의 활용 가능성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적법성과 합리성이 쟁점이 된다.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는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대비 경로, 차이점 특정, 결합동기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검증 로그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와 판단기관이 판단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공지능 평가서가 최종 결론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평가서는 판단기관이 어떤 자료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보조자료로 기능한다.

#### 제4절 증거가치와 한계 표시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서가 판단 보조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한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선행기술자료가 부족한 경우, 청구항이 불명확한 경우, 명세서 기재가 부족한 경우, 입력자료에 누락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은 이를 평가 한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평가의 증거가치는 결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자료의 명확성, 평가절차의 일관성, 판단기준의 공개성, 오류통제의 충실성 및 검증 로그의 존재에서 발생한다.

#### 제6장 결론

특허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다.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체적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 구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가”이다.

따라서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확대 일반화하거나, 출원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사후적으로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판단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발명의 확정, 선행기술의 확정,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체적 특정,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야 하는 구조적 판단이다.

이 구조적 판단은 복수 자료의 분류, 구성요소별 대비, 판단 오류의 점검 및 검증 로그 작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특히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보조 평가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이 특히 진보성 판단을 평가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공지능 자체의 권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진보성 판단이 본질적으로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특정, 결합동기 판단, 작용효과 검토, 사후적 고찰 점검 및 오류통제를 요구하는 구조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특히 진보성 AI 구조평가기준서 V1.0은 향후 특허심사,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에서 판단기관의 최종 판단을 보조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객관화하며, 진보성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